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부서보고 방법을 서면보고로 바꾸고 대체 부처보고를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직접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금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가 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로 잡혔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과제 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규정에 없어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정부

구체적인 예로 적시된 내용으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한상국 씨의 민원사례를 보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분은 말씀 가운데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나아가서는 국가의 기능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까지도 토로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국가가 감당하면 좋을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규칙을 만들 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르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규칙을 고치면 될 텐데 왜 규칙을 안 고치고 왜 끝까지 쟁송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규칙을 그렇게 고쳤을 때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 그 이유이고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 짐작이 가기는 하지만 상황 때문에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아마 법원에서는 승소판결을 내준 모양이죠? 안 해주면 안 해 주는 것이지 두 개를 다르게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봐서 재판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공특법이라는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오늘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1심 승소판결을 쉽게 준 것인가도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승소판결을 해 주려면 법적 권리로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심은 소위 공특법의 법적 권리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서울시는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이제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면, 이 두 가지를 차별한 것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제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거나 또는 무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만일에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 규칙은 형평에 반합니다. 소위 공특법 상의 권리로서의 근거가 없는 하나의 정책적 배려, 또는 편의규정으로 일종의 업무처리기준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모법에 근거 없이 규칙으로서 배려를 하게 된다면, 그 규칙 자체가 부당하지만 그것은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상국 씨가 국가기관, 국가제도 자체가 완벽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느냐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구멍들이 있고, 허점과 불합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민원기관을 중첩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재판도 1심 2심 3심으로 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만드는 과정도 두 별 세 별 이렇게 규범 자체 심사를 하

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규범 자체에 대한 심사제도, 중첩적인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해소되기 어려운 허점이 생깁니다. 설사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해소되는 과정 자체가 그것을 생송절차로 다뤄 나가 기에는 너무나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해 줄 방법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규정이 없어서, 규정이 맞지 않아서, 규정에 안 된다고 돼 있으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손질해서 그런 민원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권고, 필요하면 규정을 고치고, 또 필요하면 상위법령까지 계속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서, ‘규정에 없어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게 하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처음에 국민참여수석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수석실을 직급이 높고 조직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정책제안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정책제안을 그쪽으로 해 옵니다. 본시 정책제안은 각 부처가 다 있는데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정책제안이 아니라 민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모순과 허점들을 메꾸어 보자는 의미로, 그리고 소위 공무원들이 창구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도개선의 차원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고쳐 보자 하는 뜻으로 조직을 줄여서 혁신수석 자리 안에 제도개선비서관, 민원제안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를 해도, 다시 한 번 청와대에서 재심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심의 방향이 지금은 규범, 규정을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다시 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을 청와대가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바로 이 사례, 다가구주택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제정권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제도개선비서관이 나서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벽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규범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규범은 정부 부처에서 국회에 제안을 해서 규칙을 고치면 되지만, 지자체의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법률을 입안, 제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규칙이니까 서울시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규칙이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해야지 국회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제도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중 삼중으로 보완해 가지만 완벽해지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규범에 대한 마지막 해석은 법원에서 하게 돼 있으니 그렇게 힘드신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특법에 그 근거규정이 들어 있지 않았더라면 과연 소송에서라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나도 미처 짐작 못 했던 규정이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재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함을 우리가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자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망해서 정부와 말하기 싫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 결론까지 도와주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관으로 이해하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입장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자는 것

실제로 수요공급 상의 문제가 있으면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통일성을 두면 됩니다. 지분등기나 구분등기냐의 차이로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성은 결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공무원의 판단에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렵다.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으로 판단한 것은 이제 그 시기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과 지적역량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취지로 봐서 차별을 둘만한 정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시의회라고 하는 다수의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시민사회가 꾸준히 이런 문제를 고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사회에서 이런 시민들의 민원들을 끊임없이 대행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던 분들을 많이 모신 이유는, 이제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고충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제도까지 고쳐나가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니까 끊임없이 나온 민원을 가지고 쫓아다녀 보는데 규정에 가서 막히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도 절반은 민원대행이 직업이 됩니다. 오늘 한상국 씨의 케이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것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음부즈만 제도를 좀 더 확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중에도 지방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고 지원해서 확산되도록 하

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변명만 한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어려운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와 국민 사이의 인식의 벽을 깨는 일

김한철 씨가 말씀하신 것은 경찰 사고조사 부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우리나라의 초기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고,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감찰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과정들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개 범죄수사라는 것이 특수한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기 보다는 상당히 전문기술적인 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조사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의 공정성과 특수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일반 행정기관하고 아주 엄격하게 분리해 놓고 거기에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권도 주어져 있고 특별한 의무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까지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조사에 관한 것도 수사 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은 배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에게는 그런 특별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 않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직접 명령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검찰은 민원제도도 특수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제도도 특수합니다. 감사원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의 관리행정에 관해서는 감사를 하지만 사건수사에 관해서는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민원체계에서 움부즈만이라는 것은 사실을 조사하고 상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권고하는 구속력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에 구속력을 주어

버리면 소위 행정체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게 하거나 다른 절차를 가지고 시정하게 하는 정도의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사건에 관한한은 이 제도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지금 수사에 관해서 경찰 내부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감찰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창구로 검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제도이고,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정신청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있고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변호사를 해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것이 의뢰하러 온 사람에게 이 사건은 왜 내가 맡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길 수가 없어서 납득시키는 과정에 화를 내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못 이기냐는 말만 가지고 어려운 재판을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진 이유를 절대로 납득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로서는 제일 답답한 것이 수사이고, 국가 민원기관으로서는 제일 답답한 것이 수사 관련한 민원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좀 불편하다가 아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의 죽음 같은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과 친척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로서 설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고조사가 부실했다라고 하면 변호사나 도움을 주는 분들은

그 말을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가 부실했다라고 하면 부실했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그게 변호사의 자세입니다. 그게 그럴 리가 있느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두 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며, 국가기관의 업무와 국민간의 사이에서 가급적이면 없어야 할 인식의 차이, 그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히고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직사회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인식의 벽, 그리고 거기서도 발생하는 사실과 다른 많은 불신과 오해,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 무한책임을 지고 노력하라고 항상 권고하고 있으면서도, 또 공직자들에게 때때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중에 업무증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옴부즈만이 인사위원회에도 있고, 옴부즈만과 조금 다르지만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국민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전체의 사건처리 과정을 보면서 유형들을 다시 분류하고 그 직무를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석기록을 세밀하게 해 놓아서 출장시간, 만난사람 등을 세밀하게 축적하면 시스템을 통해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이지원 같은 곳도 일을 하면 실

제로 기록하는 시간만 나오지 나가서 일한 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한 시간을 기록할 때 같이 보고하도록 해서 시스템을 유형별 소요시간이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자료를 축적한다면 인력과 예산을 짜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의 사례분석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직접 조사는 많고 부처로 이관하는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원이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와 절차에 대한 것을 조사 분석해서 거기엔 필요한 제도가 어떻게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을 부처에서 1차적인 민원으로 잘 처리하면 고층위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부가 민원시스템을 정부혁신과정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전문공무원들 사이의 인적교류도 하고, 서로 학습도 같이 하면서 민원처리 사례에 대한 표준도 만들어 가는 시스템으로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중요한 것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의 사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위한 표준을 삼기 위해 많은 제도개선 사례 등을 판례 축적하듯이 축적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처리 사례가 좀 잘 분석되어 정리가 된다면 일반 시민들도 그 사례들을 보면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판례 같은 것을 전문가 못지않게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의 민원처리도 그렇게 축적해서 민원인들이 1차적으로 안방에서 조사를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지식관리시스템에서 특별히 효율성이 있는 파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를 하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이 모두 그런 시스템을 참고 한다면 불필요한 민원이 중복되고 남용되는 일이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자주 중복되고 불필요한 민원은 민원포탈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이 남용되거나 부당한 민원이 있는지에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 열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부처 파견 공무원도 있고 고충위 소속 공무원도 있고, 시민사회에서 와서 와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성과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이나 열정 같은 것을 기초로 일하기 때문에 단순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정으로 일하고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로나 자세, 열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결과가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 보려는 노력이 담보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정이 딱해서 또는 뭔가 결론이 사리에 맞지 않아서 꼭 한번 열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 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답답함이라도 풀리고, 안 되는 것인 줄 나중에 이해라도 하면서 단념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있어서도 특수한 점을 좀 이해하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방부 군민원에 관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

신위의 의견은 군민원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국방부 안에 특수한 고충기관, 특수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 때문에 군 지휘권이 흔들린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군 조직이라는 것이 하급자의 과오는 상급자의 평가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와 군 조직은 조금 별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방부라는 조직이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마지막으로 상급자의 책임으로 닿지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권위나 고충위를 통해 군 쪽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출신이나 현역군인 그리고 국방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사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특수성도 존중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옴부즈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그 범위가 수사전문기관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 기능을 좀 잘 해 주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수사부분의 불만,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민원부분은 변호사인 내가 보아도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제기를 받기 때문에 역시 문제제기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피로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 안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수사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 등을 통해서 수사과정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하는 특수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일반 고충처리 기구에서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법무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해 보지 않은 변호사 등이 수사민원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꼭 나쁜 뜻으로 해석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유사한 사람은 같은 생각을 품게 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의 말을 들어보니 검찰의 경우는 수사 전반에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는 아직 없지만, 다만 수사에서 이의가 제기된 그러니까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수사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참여항고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 부분은 수사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 혁신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군 ombudsman과 수사 ombudsman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의할 때는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은 인권위에다 맡기고 또 어떤 것은 고충위에다 맡겨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국방부 쪽에서는 지금 군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군수조달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투명성 작업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거기다 군 개혁까지 한꺼번에 몰아붙이면 군도 힘들어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일들이 조금 마무리 되는대로 시차를 고려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 형성된 인식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 안에서 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충위에 새로운 기대를 거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고충대리를 많이 해 보셨던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